

# 변상의무확인서

## 1. 확인사항

미성년자		생년월일	(6자리)	연락처	
친권자	부	생년월일	(6자리)	연락처	
	모	생년월일	(6자리)	연락처	
	기타	생년월일	(6자리)	연락처	
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친권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친권을 행사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친권자 1인 지정(이혼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친권자 사망				

## 2. 안내사항

-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로 (민법 제4조),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.
- 단,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. (민법 제 826조의 2)  
- 혼인은 법률혼 (혼인 신고를 한 경우)만 해당합니다.
-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,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. (민법 제 909조)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이혼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친권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발급을 통해 친권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회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(친권자, 후견인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본인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상기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(친권자)임을 확인하며,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보험금 등을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귀사에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신청일자: 2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친 권 자: (서명)